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청 소 년 보 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(일명 ‘셋다운제’) 규정을 삭제하고, 인터넷게임 중독·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청소년 보호법」이 개정(‘21.12.7.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관련 조항 삭제(현행 제21조 및 제22조 삭제)
- 나. 인터넷게임 중독·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내용 추가(안 제23조)
- 다.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을 ‘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’로 규정(안 별표1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)”을 “(인터넷
게임 중독·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
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중독”을 각각 “중독·과몰입 등의”로 하며, 같
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중독 청소년”을 각각 “중독·과몰입 등의 청
소년과 그 가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중독”을 “중독·과몰입 등
의”로 한다.

별표 12 제1호가목 후단 중 “위반횟수는”을 “기간의 계산은”으로, “한 날
과”를 “받은 날과 그 처분 후”로, “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
로 하여 계산한다”를 “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
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평가 및 개선 등 조치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 1. 게임의 유형,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한 평가 대상 게임물 2.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(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예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이 있는	<삭 제>

사람으로서 청소년·정보통신·게임·교육·상담·의료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여성가족부에 둘 수 있다.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)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1조 단서에서 “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.

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

<삭 제>

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기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
3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. 다만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.
제23조(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여부 진단
2.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

제23조(인터넷게임 중독·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) ①

1. ----- 중
독·과몰입 등의 -----
2. ----- 중

예방을 위한 교육·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
3.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의 치료·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4.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의 치료·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
5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 전문상담 교육
②·③ (생략)
독·과몰입 등의 -----

3. ----- 중독·과몰입 등의 청소년과 그 가족-----

4. ----- 중독·과몰입 등의 청소년과 그 가족-----

5. -----

----- 중독·과몰입 등의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92